

시 민

문서번호	노동정책담당관-1472
결재일자	2020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수습사무관	산업안전팀장	노동정책담당관	노동민생정책관
협 조	노동정책팀장		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
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 강화 추진계획

2020. 2.

노동민생정책관
(노동정책담당관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 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 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 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 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 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?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

산업안전보건조치 대응 강화 추진계획

급속 확산중인 중국 우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각 사업장 보건조치 대응 강화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(사업주 등의 의무), 제39조(보건조치), 제51조(사업주의 작업중지)
- 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’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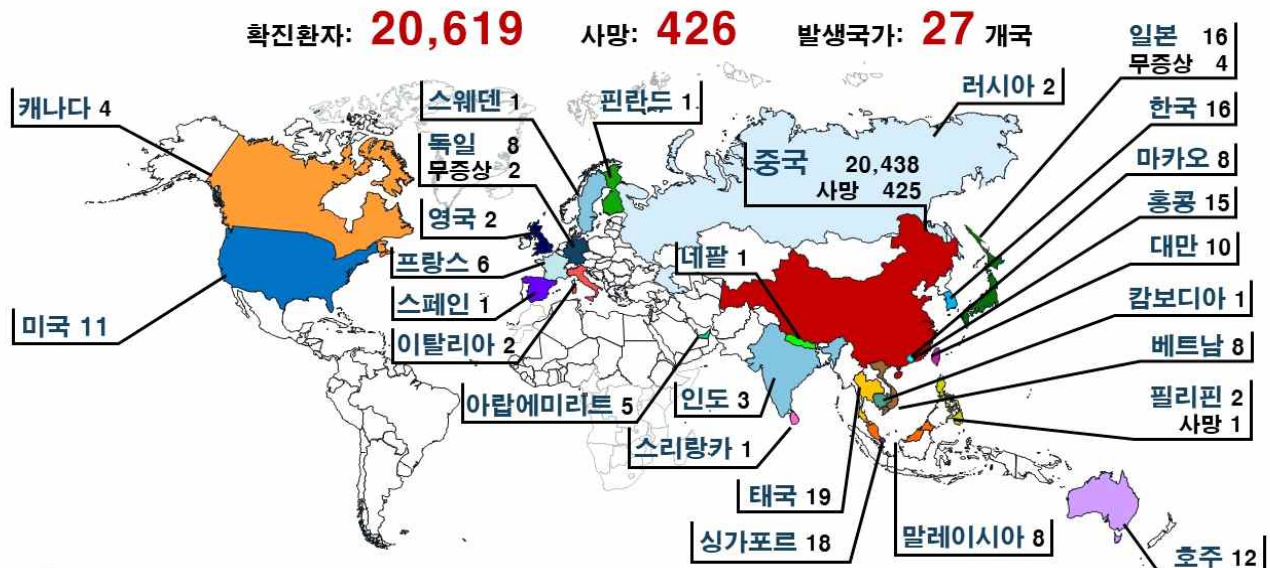
□ 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’의 국내외 발생 및 진행경과

- (국외) 2.4.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자 총 20,603명(사망426)으로 발생지 중국(20,438명/사망425명), 태국·홍콩·미국·유럽 등 27개국 전세계적 확산중
- (국내) 2.4일 09시 기준 현재 확진환자 16명, 조사대상 ‘유증상자’ 591명

□ 발생현황

국내·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현황

<‘20.2.4. 09:00 기준’>



출처: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

□ 추진방향

-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 (하도급, 파견, 용역노동자 포함)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
- 전 부서 산업안전 보건업무 담당자 본 방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 (하도급, 파견, 용역노동자 포함)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 확인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대비, 사업장 차원에서 업무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협력업체 포함 대비·대응계획 수립
- 사업주는 소속노동자(하도급, 파견, 용역노동자 포함)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(격리대상자 포함)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

□ 사업장 별 조치사항

①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·소독 유지

- 개인위생 관리 강화
 -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(비누 등) 또는 손 소독제,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 비치
 - 노동자 개인위생 실천 유도
 - 기침 예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내 화장지를 비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사용한 화장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비치
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기침 예절 준수

-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코와 입을 막는다.
- 콧물이나 가래와 같은 것이 있을 경우 화장지 또는 옷소매를 사용한다.
- 사용한 티슈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린다.
- 호흡기 분비물, 오염된 물건이나 물질과 접촉한 후 손을 깨끗이 씻는다.

-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*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 대비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 준비

* 비누, 손세정제, 핸드타월, 화장지, 소독용 세제, 체온계 등

- 노동자 및 고객(방문객)을 대상 개인위생 실천방안 홍보
 - 노동자 및 고객(방문객) 대상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씻기, 기침 에티켓 등) 홍보
 - 사업장 내 샤워실 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 포스터 부착

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, 서울시 홈페이지(www.seoul.go.kr) 자료 등을 활용

- 사업장 내 청결 유지
 - 세면대, 문손잡이, 난간,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·소독 유지
 - 컵·접시·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, 휴게실·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·신문 제거,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
-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 유지, 침구류, 수건류 분리 사용
-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 철저,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되도록 노동자 교육

②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

- 발열이나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 받도록 권고
 -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건강 보호
- 해외 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·후 관리 강화

- 해외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“감염 예방수칙,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, 해외에서의 주의사항, 귀국 후 유의사항 등”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
-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,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, 검역관에게 설명

* 여행 건강(Travel Health)

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였습니까? 열, 심한 기침, 호흡곤란, 혹은 몸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?

☞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.

-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증상과 해외에 체류했었는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.
-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.
- 사용한 화장지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.

- 해외 출장 후 복귀한 노동자,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사내 의무 상담실이나 기타 발열 감시자 지정 등 자체 발열 모니터링 실시
- 특히 의료기관*, 대공원, 미술관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 자체점검, 대응계획 수립 추진

* 청소, 세탁, 간병인,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

-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및 노동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*·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비치

*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, 고객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(알코올 세정제)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

③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

- 회사 내에 있는 노동자가 중국 방문 또는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,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,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
- 이때 해당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내에서 개인보호장구(마스크 등)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릴 것
-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우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
- 만일 발열·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였다면 관할 보건소에 바로 연락하도록 조치하고, 접촉한 사람 또한 자가 격리 대상으로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
- * 확진자가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사업장 혹은 전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산업·직군의 경우 노동자에게 즉시 알리고, 작업중지, 임시휴업 등 적절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권고

④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

-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·대비계획을 수립 업무 수행 전담부서 지정
 -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·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‘업무 지속계획’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
- *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같이 근무하는 하청·파견·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

-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
 -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 파악, 노동자 관리대책 마련
 - * 본인감염, 환자간호,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 사유 가능
 -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수립*
 - * 대체근무조 편성, 대체근무지 지정, 근무시간 조정, 재택근무 등
 - 감염자에 대한 보수·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 마련
- 격리노동자 등에 대해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휴가 이외 병가 등 별도 휴가·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, 해당 규정 준수 휴가·휴직 부여
 -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,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 휴가 외 추가 휴가·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

⑤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

- 「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」가 해제 시점까지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 유예
 - * '20. 1. 27.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(경계)임
 - 특수·배치전 건강진단 검사항목 중 “폐기능 검사” 등 검사 중 비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*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
 - * 폐기능 검사(폐활량검사,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, 비특이기도과민검사), 객담세포검사
 -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
-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사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

□ 행정사항

○ 기관별 조치사항

조치사항	추진부서
<p>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조치 강화 대책 수립</p> <p>- 대책 마련시 위탁기관 등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포함</p>	<p>시 본 청 사 업 소 투 자 출 연 기 관 민 간 위 탁 기 관 등</p>
<p>사내 인트라넷 등 안내문 게시 및 행동요령 안내</p> <p>-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</p> <p>- 사업장 내 청결 유지</p>	
<p>민원접점부서 직원 마스크 착용 근무 권고</p>	
<p>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(기침, 호흡곤란, 인후통, 가래 등)이 있을 시 출근하지 말고 각 보건소 1339(질병관리본부 콜센터)와 다산콜센터(120) 신고</p>	
<p>시민 다중이용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검토</p> <p>체온계 비치, 마스크 소독용 알코올제 등 보호구 비치</p>	
<p>병원 등 1차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무부서 직원 및 노동자, 집단작업을 하고 불특정 다중 이용자와 대면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장 차원 선제적 보호 조치</p>	<p>시 산 하 의 료 기 관</p>
<p>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</p>	

- 소요예산 : 기관별 자체 예산 활용 적극적 선제적 대응
- 사업주 조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고용노동부 협의 추진

신종 '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' 전직원 공지 안내문

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'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'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직원은 숙지하여 주시고 관련 담당자께서는 우리시 노동자들께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전달 교육 실시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

-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(비누나 알코올 손 세정제 사용 30초 이상 문지르기)
- 기침, 재채기 시 화장지 또는 옷소매로 입, 코를 가리고, 화장지는 사용 후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
-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

2. 사업장 내 청결 유지

-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소독제(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, 알코올성분 소독제)를 사용
- 컵, 접시, 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
- 휴게실, 대기실 등 공공 구역 주기적 실내 환기 실시
-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, 침구류,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



1. 마스크 착용

대중교통 이용,
공공장소 방문 시 필수!



2. 손 씻기(청결)

30초 이상 충분히
비누로 씻어요!



3. 기침 예절

기침은 옷소매로
가리고 하세요!




행동수칙을 꼭 지켜, 나와 이웃을 지켜주세요!
서울시가 시민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문의를
☎ **관할 보건소 / 1339 / 120**

※ 의심되면 병원방문 전에, 위 번호로 전화 주세요.

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민 감염 예방행동수칙

- ※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**마스크 착용!** 
 - 특히,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
- ※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**손 씻기!** 
- ※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 
- ※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※ 해외 **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!** **+**
 - 후베이성(우한시 포함)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발생할 경우
 -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☎1339로 문의
 -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
 -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

출처 : 질병관리본부 2020.1.27.

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?

A

- 방문 전** 질병관리본부 '해외감염병NOW'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.
- 방문 중**
- 가금류,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.
 - 호흡기 유증상자(발열, 호흡곤란 등)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.
 -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.
 - 손씻기,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.
- 방문 후**
-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☎1339(24시간 상담가능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,
 -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.

☎ 관할 보건소 연락처 (가나다순)

강남구(3423-7139)	광진구(450-1937)	동대문구(2127-5422)	성동구(2286-7040)	용산구(2199-8093)
강동구(3425-6713)	구로구(860-2560)	동작구(820-9465)	성북구(2241-6022)	은평구(351-8278~9)
강북구(901-7706)	금천구(2627-2717)	마포구(3153-9037)	송파구(2147-3478)	종로구(2148-3557)
강서구(2600-5868)	노원구(2116-4344)	서대문구(330-8726)	양천구(2620-3856)	중구(3396-6363)
관악구(879-7131)	도봉구(2091-4483)	서초구(2155-8095)	영등포구(2670-4905)	중랑구(2094-0742)

-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**확진환자와 접촉하여 '능동감시'가 필요한 분에게** 제공됩니다.

※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상황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귀하의 **중국 최종 체류일로부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**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

- **평상시와 같이 외출, 출근,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.**

- **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.**

- 손위생(손씻기 또는 손소독)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
-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-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, 기침,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.

- 자가모니터링

- **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?**
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.
-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,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.

- **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**

- 발열(37.5 °C 이상),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,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.

☞ 위의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국번없이 ☎ 1339)로 알려주십시오.

※ 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

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'자가격리' 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.

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

- **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.**
- **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.**
 -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,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.
 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세요.
 - ※ 공용 화장실, 세면대를 사용한다면, 사용 후 소독(락스 등 가정용소독제)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
- **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.**
- **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**
 - 불가피한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.
- **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하세요.**
 -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
 -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**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.**
 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.
 -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 -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, 기침,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.

■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귀하의 **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**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**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?**
 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.
 -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,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.
- **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?**
 - 발열(37.5 °C 이상),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,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.

☞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국번없이 ☎ 1339)로 알려주십시오.

※ 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

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'자가격리' 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.

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

-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.
 - 특히,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.
 -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.
-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.
-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.
-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.
-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.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
 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테이블 위, 문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.
-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.

☞ 자가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국번없이 ☎ 1339)로 알려주십시오.

※ 담당보건소: _____ 담당자: _____ 긴급연락처: _____

*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: 발열(37.5 °C 이상).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, 폐렴